#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097

발의연월일: 2023. 5. 17.

발 의 자:신현영・이용우・김승남

김한규・이수진・최종윤

강민정 • 고영인 • 이인영

윤후덕 의원(10인)

## 제안이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6조에 따른 출생신고 의무에 따라 신고의무자는 출생신고서 및 출생증명서를 첨부해 기한 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신고의무자가 고의적으로 출생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아동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아동 학대 등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됨.

최근 헌법재판소도 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서, 자유권과 사회권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독자 적 기본권으로 판단한바, 신고의무자에게 출생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 과는 별도로 국가 행정기관 체계를 통해 출생신고의 누락을 파악하여 출생 아동의 존엄성을 보호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의료기관은 출생 아동에 대한 출생사실을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임산부의 진료기록부에 입력하고,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산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하도록 하여,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44조의3 신설).
-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산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송받은 출생사실을 출생지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신고의무자로부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44조의3 및 제44조의4 신설).

#### 법률 제 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3 및 제44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3(출생사실의 통보) ①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출생한 경우 출생 후 4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임산부의 진료기록부(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를 말한다. 이하같다)에 입력하여야 한다.

- 1. 출생자의 모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성명
  - 나. 주민등록번호(모가 외국인인 때에는 외국인등록번호)
  - 다. 「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 의료급여자격관리를 위해 부여한 번호(나목의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 2. 출생자의 성별, 수(數) 및 출생 연월일시
- 3. 그 밖에 의료기관의 주소 등 출생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입력한 임산부의 진료기록부를 「국민

건강보험법」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이 조에서 "심 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하여야 한 다.

- ③ 심사평가원은 제2항에 따라 임산부의 진료기록부를 전송받은 때에는 이를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출생정보의 통보, 전산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44조의4(출생신고의 확인 및 조사 등) 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이를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출 생정보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출생정보를 통보받은 시·읍·면의 장은 이를 바탕으로 신고의무자가 제44조에 따른 기간 내 출생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최고하거나 제46조제4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야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언 행 <u>&lt;신 설&gt;</u>	제44조의3(출생사실의 통보) ①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 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 다)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출생한 경우 출생 후 4 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임 산부의 진료기록부(전자적 형 태로 바꾼 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력하여야 한다. 1. 출생자의 모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성명 나. 주민등록번호(모가 외국 인인 때에는 외국인등록번 호) 다. 「사회보장기본법」제37 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상 의료급여자 격관리를 위해 부여한 번 호(나목의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출생자의 성별, 수(數) 및 출

## 생 연월일시

- 3. 그 밖에 의료기관의 주소 등출생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입력한 임산부의 진료기록부를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이 조에서 "심사평가원(이하이 조에서 "심사평가원"이라한다)에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 ③ 심사평가원은 제2항에 따라 임산부의 진료기록부를 전송받 은 때에는 이를 출생지를 관할 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 ④ 출생정보의 통보, 전산정보 시스템의 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 칙으로 정한다.

제44조의4(출생신고의 확인 및 조사 등) 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이를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출생정보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출생정보를 통보받은 시·읍·면의 장은 이를 바탕으로 신고의무자가 제44조에 따른 기간 내출생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를확인하고,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최고하거나 제46조제4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야한다.